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4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별표4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시행령 개정 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 상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조건(하루 100ℓ 이상 폐기물 배출) 삭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재규정하는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항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규정을 “제16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으로 개정

3. 주요내용

- 제2조제3호 중 “(하루 100ℓ 이상)” 삭제
- 제8조제5항제4호 삭제
-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삭제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삭제
-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제8조제4항 중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2. ~ 11. 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100ℓ 이상)하는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4호, 제16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u>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100ℓ 이상)하는 사업장</u> 을 말한다.	3.----- -----음 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현행	개정안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u>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루 100ℓ 이상)하는 사업장 : 건조, 탈수 등을 통해 부피감소 등</u>	4.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u>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u>[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 2. <u>달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20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두어야 하며, 그 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3. <u>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4.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u>	제1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table><tr><th rowspan="2">적용범</th><th rowspan="2">부과항목</th><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 rowspan="12">폐기물관리법</td><td>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td><td></td><td></td><td></td></tr><tr><td>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td><td>10</td><td>20</td><td>30</td></tr><tr><td>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td><td>20</td><td>30</td><td>50</td></tr><tr><td>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td><td>50</td><td>70</td><td>100</td></tr><tr><td>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td><td></td><td></td><td></td></tr><tr><td>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td><td>30</td><td>50</td><td>100</td></tr><tr><td>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td><td>30</td><td>50</td><td>100</td></tr><tr><td>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td></tr><tr><td>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td><td>30</td><td>40</td><td>60</td></tr><tr><td>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td><td>60</td><td>80</td><td>100</td></tr><tr><td>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td><td>20</td><td>30</td><td>50</td></tr><tr><td>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td><td>100</td><td>300</td><td>500</td></tr></table>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삭제>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개 정 안

<삭제>

<삭제>

개 정 안

<삭제>

<삭제>

7

개 정 안

<삭제>

(양쪽)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달성군수

시행일

수신: 달성군수

발신 : (입소명)

(대표자)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illegible]

①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1. 신고번호	제	호
---------	---	---

처리 계획 확인사항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비생량	비생량 감량	비생량 감량 (전체비) 감량, %
-----	--------	--------------------

처리 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연락처 주소·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삭제>

(學書)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현행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신설 2014.10.3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14.1.17> (호표)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출급식인원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kg/일) 부산물 발생량(kg/일) 처리방법 처리처 ⑧자기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kg/월) 위탁 계약비용(원/kg) 위탁 요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수 직인 210mm×297mm(박싱지 80g/㎡(자·흑·중·복))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신설 2014.10.30) (호표) <변경사항> <table><tr><th>연월일</th><th>내용</th><th>확인</th></tr><tr><td></td><td></td><td></td></tr></table>	연월일	내용	확인				<삭제>
연월일	내용	확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8. 5. 2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별표 8] <개정 2018.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4) 삭제 <2014.12.31.>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삭제 <2018.3.27.>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68조			

한 경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	법 제68조	100	200	300

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항제5호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500	700	1,000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법 제68조	50	70	100

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제3항 제4호의3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 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 호의2	100	200	300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 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 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법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허.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법 제68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500	700	1,000
		500	700	1,000
		500	700	1,000
		300	500	700
		500	700	1,000
		300	500	700
		500	700	1,000
		500	700	1,000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 삭제 <2016.1.19.>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 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 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 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 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200	500	1,000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모.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보.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7호의2	50	70	100
조.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100	200	300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100	200	300
초.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법 제68조 제2항	100	200	300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의2			
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호.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